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4.21 (화) 10:30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정윤숙 의원 외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설치(안 제3조)
- 나.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(안 제4조)
- 다.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·지원 및 지정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라.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지원·경영지원·재정지원·우선구매 등 지원

근거 마련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
마. 공공서비스 공급과 도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
장려 규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'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·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와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